

## 규정심의위원회규정

**제1조(목적)** 예원예술대학교 제 규정의 제정·개폐 등의 조사연구 및 정비를 위하여 규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둔다.

**제2조(구성)**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1.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기획조정처장이 된다.<개정 2017.09.25>
2.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.
3.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(개정 2015.1.13.)

**제3조(회의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**제4조(기능)** 위원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제 규정의 제정, 개폐, 정비
2. 제 규정 자료의 조사 연구
3. 제 규정집의 편찬
4. 제 규정의 용어 정비
5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5조(안건 제출)** ① 각 부서에서 입안된 규정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간사는 제1항의 제출된 규정안을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임기)**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**제7조(주관부서)** ① 위원회의 사무는 기획조정처에서 관장한다.<개정 2017.09.25>

② 이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기획조정팀장이 된다.<개정 2017.09.25>

**제8조(규정집)** ① 기획조정처는 제 규정의 원본을 보관하고, 규정집을 편집 발간하여 각 부서별로 배부한다.<개정 2017.09.25>

② 규정집을 보관한 부서는 제정 또는 개폐된 부분을 가제정리방법에 준하여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.

**제9조(규정대장)** 제정 및 개폐된 제 규정은 규정대장 [별지 제1호 서식]에 등재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유권해석)** 규정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기획조정처장의 유권해석에 따른다.<개정 2017.09.25>

부 칙(2000. 3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3. 10. 6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9. 2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 12. 2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2-7-0-4 규정심의위원회규정

---

부 칙(2017. 5. 10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9. 25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 규정대장]

규 정 대 장						
일련번호	규정번호	업무소관부서	규 정 명	결재일자	시행일자	비 고